

문서번호	생활보장과-16006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생활보장과장	주민생활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16.5.9.	고영석	유숙희	이승하	강대형	전결 05/09 代 고한석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기획재정국장	代 조상연			
보도여부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재무과장	김영모			
			생활보장팀장	임경환			

장애인차량 불용 및 무상양여 계획

2016.5.9.

강 북 구
(생활보장과)

장애인차량 불용 및 무상양여 계획

장애인차량 불용결정에 따라 불용품을 활용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비영리단체인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차량을 무상양여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및 제78조(불용품의 양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불용결정) 및 제79조(불용품의 양여)
- 강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0조(불용품의 소요조회 와 불용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8조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II 불용 차량현황

- 차량현황
 - 차량명 : 그랜버드(기아) 대형승합 11,000cc
 - 구입년월일 : 2002.02.06.(14년 경과)
 - 사용기관 :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 차량용도 : 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장애인 관련 단체 차량지원 등
- 차량교체 사유 및 사용가능 확인
 - 교체사유 : 내구연한 경과 및 차량노후화
 - 사용가능여부 확인
 - 차량의 내·외관 및 차량 운행상태는 양호하여 재사용이 가능함
 - 안정적이고 쾌적한 차량운행을 위해서는 약간의 차량 소모품 및 수리비용이 들어갈 수 있음

Ⅲ 차량 무상양여

무상양여 검토

○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불용용품 양여)

○ 양여요구단체 :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연합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양여 대상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해당되며,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행한 차량은 지역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입한 물품에 해당 되므로 양여가 가능

- 연합회에서 제출한 무상증여 차량활용 내용을 보면 장애인 나들이 지원, 장애인 무료캠프 및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해 사용

무상양여 단체

○ 단 체 명 :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

○ 대 표 자 : 유영호

○ 주 소 : 강북구 덕릉로 126 우일빌딩 1층(번동)

○ 사용용도 : 장애인 무료캠프 및 장애인 행사지원, 각 단체 또는 분회 나들이 행사 대여

무상양여 조건

○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 작성 【붙임 1】 : 관련 조례 별지 32호 서식

○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별도 「양여계약서」를 추가 작성 【붙임 2】

불이행 시 행정조치

○ 양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요구할 경우 무상양여 계약 취소 및 차량을 즉시 반환조치하여 우리구에서 차량 매각

○ 차량사용이 불가능하여 차량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차량을 우리구에 반납

IV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추진일정

- 2016.05.09.한 : 불용결정 및 무상양여 계획 수립
- 2016.05.12.한 : 공용차량 불용 결정 및 무상양여 사항 통보
- 2016.05.13.한 : 합의서 작성 및 차량 인계 인수

행정사항

- 재무과 : 무상양여 의뢰 시 관련 절차 이행 협조
- 교통행정과 : 무상양여에 따른 소유자 변경 등록 절차 협조

【붙임 1】

[별지 제32호 서식]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

무상양여를 하고자 하는 기관							
지방자치단체명	강북구	소속기관명		생활보장과	회계명		
정부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금액 (취득가액)	물품의 상 태	비고
25101502	그랜버드 (기아자동차)	대형승합	대	1	77,796천원	- 14년사용 - 누적운행거리 141,388km	
무상양여의 조건		①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차량인수 후 차량점검을 통해 운행 가능여부를 재 확인 하고 안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차량보험 등)을 이행한 후 운행한다. ② 차량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부담한다. ③ 양여 목적 이외의 용도(수익사업 등)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요구할 경우 무상양여 계약 취소 및 차량을 즉시 반환조치 한다. ④ 차량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차량을 강북구에 반환한다.					
무상양여를 필요로 하는 사유		차량을 이용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2016년 5월 일 인계자 : 강북구청장 : (인) 물품관리관 : (인) 물품출납공무원 : (인)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기관							
기관단체명	강북구장애인 단체총연합회	소속기관명		회계명			
무상양여 받은 후		물품의 분류	대형승합				
		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2016년 5월 일 인수자 :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인) 강북구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강북구물품출납공무원 직성명 (인)							

【붙임 2】

양여계약서(안)

○ 재산의 표시

- 물품명 : 대형승합 그랜버드(기아자동차)
- 수 량 : 1대

위 재산에 대하여 강북구청장(이하 “양도자”라 한다)과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이하 “양수자”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자”는 이 계약체결 즉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양수자”는 양여된 재산을 다음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장애인단체 프로그램 지원
2. 장애인단체 또는 분회나들이 행사지원

제3조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 받은 재산을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양수자가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양수자”는 본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양쪽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6년 5월 일

(양도자) 강북구청장 (인)

(양수자) 강북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인)